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도실무관의 삼단봉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26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무도실무관의 삼단봉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무도실무관 개요 및 현황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8.
3. 회 부 일 : 2024.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무도실무관의 삼단봉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무도실무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구인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6조(보호관찰관) ① · ② (생략) <신설>	제16조(보호관찰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계호 업무 보조 등을 위한 무도실무관을 둔다.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관찰소 소속 무도실무관은 정당한 직무 집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삼단봉 ② (현행과 같음)

- 무도실무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무부가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공무직근로자¹⁾로, 보호관찰소에서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을 도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보조함.
-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²⁾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이들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³⁾을 받고, 법원은 선고와 함께 이들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⁴⁾을 부과할 수 있음.

-
- 1)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아⁵⁾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이들을 구인⁶⁾하며,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해제·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를 감독함.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의 피부착자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⁷⁾와 같이 피부착자들의 물리적 행사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만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를 사용⁸⁾할 수 있도록

-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 10. 8. 법무부)’, pp.90~95.
-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하고 있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고 방검복과 장갑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도실무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보호장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등을 포함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도실무관의 안전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 관계인 공무원근로자와 그 대외직명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무도실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법률에 명문화할지, 유사입법례의 예9)에 따라 ‘보호관찰보조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帶)
 4. 가스충
 5. 전자충격기

9) 「도로교통법」 제5조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입법례¹⁰⁾를 참고하여 ‘무도실무관을 둔다’라는 자구를 ‘무도실무관(또는 보호관찰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다(또는 채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임의규정으로 할지 강행규정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무도실무관(또는 보호관찰보조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호신용경봉(속칭 삼단봉)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¹¹⁾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1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끼칠 수 있는 장비로 지정되어 있고, 호신용경봉의 사용은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국가 공권력 발동의 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무도실무관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5

-
2. 무기 : 권총 · 소총 · 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산탄총 · 유탄발사기 · 박격포 · 3인치포 · 함포 · 크레모아 · 수류탄 · 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 · 최루탄등 : 근접분사기 · 가스분사기 ·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 · 살수차 · 특수진압차 · 물포 · 석궁 ·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1. 무도실무관 주요 업무

-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대상자 행동관찰, 출장면담 시 업무 보조
-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분석, 현장확인 등 업무 보조
-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대상자 경보처리, 준수사항 이행 감독 등 업무 보조

2. 무도실무관 지역별 배정인원

(단위 : 명)

기관명 (지소포함)	배정 인원	기관명 (지소포함)	배정 인원
서울	21	대구	20
의정부	9	부산	9
인천	12	울산	6
수원	24	창원	12
춘천	11	광주	12
대전	16	전주	8
청주	7	제주	3
총 합계			170